##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15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김위상・김선교・임이자

이달희 · 서범수 · 박정하

신동욱 · 김승수 · 한지아

김기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생물·무 기물질·유기물질 등에 관한 수질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되어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돗물, 먹는샘물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별도의 수질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함.

이에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먹는물 등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제5조제3항).

법률 제 호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미세플라스틱"이란 크기가 5밀리미터(mm) 이하인 물에 녹지 않는 고체플라스틱 입자 또는 조각을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미세플라스틱 등에 관한 수질 기준"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10. "미세플라스틱"이란 크기가		
	<u>5</u> 밀리미터(mm) 이하인 물에		
	녹지 않는 고체플라스틱 입자		
	또는 조각을 말한다.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③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u>수질 기준</u> 및 검사 횟수는 환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경부령으로 정한다.	미세플라스틱 등에 관한 수질		
	<u>기준</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